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91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구자근 · 인요한 · 김선교
최수진 · 박준태 · 최은석
박성민 · 강대식 · 박덕흠
강승규 · 김위상 · 김도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함)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항 신설 등).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제17호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1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 급신고 등) ①·② (생 략)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 급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u>
<u>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 ----- ----- -----

④ · ⑤ (생 략)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
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
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
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6. (생 략)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
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
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
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31조제5항-----

18. 제31조제6항-----

요구한 경우 19. ~ 26. (생략) ③ (생략)	----- 19. ~ 2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